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2-2BL)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Ⅰ 공급개요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56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14~28층 14개동 총 928세대 중 일반분양 92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96세대(일반[기관추천] 20세대, 다자녀가구 92세대, 신혼부부 37세대, 노부모부양 28세대, 생애최초 19세대 포함)]

■ 입주예정시기 : 2027년 8월 예정 ※ 입주예정시기는 추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확정	(예비)
민영 주택	84.9437A	84A	84.9437	28.2360	113.1797	57.6974	170.8771	175	**17**	**85**
	84.9841B	84B	84.9841	28.7906	113.7747	57.7247	171.4995	31	**3**	**15**
	102.9716	102	102.9716	26.9022	129.8738	64.2038	194.0776	164		
	121.9554	121	121.9554	31.1793	153.1347	76.0405	229.1752	170		
	139.9830A	139A	139.9830	35.3577	175.3407	87.2809	262.6215	123		
	139.9940B	139B	139.9940	35.6830	175.6770	87.2877	262.9647	129		
	139.9600C	139C	139.9600	35.6182	175.5782	87.2665	262.8447	126		
	166.9819	166	166.9819	44.7660	211.7479	104.1149	315.8628	10		
공급세대 합계								928	**20**	**100**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6조 85㎡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세대)

구분		84A		84B		소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		3	15	1	5	4	20
장기복무제대군인		3	15	-	-	3	15
10년이상복무군인		3	15	-	-	3	15
중소기업근로자		4	20	1	5	5	25
장애인	광주광역시	3	15	1	5	4	20
	전라남도	1	5	-	-	1	5
합계		17	85	3	15	20	100

※ 각 주택형 및 기관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Ⅱ 공급일정 안내

■ 특별공급 일정(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24년 4월 05일 (금) 예정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www.중앙공원-롯데캐슬시그니처.com)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4년 4월 16일 (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및 동·호수발표	2024년 4월 25일 (목)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서류접수일정	2024년 4월 27일 (토) ~ 2024년 5월 5일 (일) 예정	견본주택접수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54,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M/H
계약일정	2024년 5월 7일 (화) ~ 2024년 5월 9일 (목) 예정	견본주택접수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54,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M/H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4:00) 단,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견본주택 별도 문의)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또는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획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td><td>•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주택공급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본인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 단순 동거인 등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광주광역시</th><th>전라남도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50 만원</td><td>200 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400 만원</td><td>300 만원</td><td>6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700 만원</td><td>400 만원</td><td>1,0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000 만원</td><td>500 만원</td><td>1,5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Ⅳ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www.wepark-central.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한 후라도 다른 주택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V 유의사항 안내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항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형, 추천기관명, 연락처 등)
- 당첨자발표일이 일반공급 당첨자발표일과 동일하게 변경됨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동일주택 내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며, 동일 세대내 중복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등)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 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 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 할 경우 소명 등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여부를 판정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5년 동안 사업주체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 접수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 및 신청 취소 등 정정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03.25.(월) 주택청약제도 개정·시행 예정으로 개정내용 및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은 2024.04.05.(금)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사업주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청 유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견본주택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홈페이지(www.중앙공원-롯데캐슬시그니처.com)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 분양문의 및 견본주택 위치

■ 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154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www.중앙공원-롯데캐슬시그니처.com)
■ 분양문의 : 1660-2772

Ⅶ 사업지 위치도

상무지구
중심상업
1호선
운천역
쌍촌역
화정역
농성역
돌고개역
운천저수지
상무역
광주여고
광주서석고
효광중
서광주우체국
치평중
광덕고
성진초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BL
염주초
상무초
광주2호선(공사중)
금호중
화정남초
금부초
광주월드컵
경기장
염주종합체육관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역 예정지
역 예정지
광주서구
공공도서관
마재초
중앙공원
풍암생활
체육공원
광주2호선(공사중)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2-1BL
풍암저수지
호남삼육고
제2순환도로
광주중
화개초
서광주역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2-2BL
운리초
경전선
풍암고
운리중
광주제2순환도로
진출입로
금당산
전평제근린공원
송암